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방송홍보 및 축하공연 행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재]생거진천문화재단

I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군민에게 위로와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과업개요

- 과업명: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방송홍보 및 축하공연 행사대행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 과업기간 : 2026. 10. 9.(금) ~ 10. 11.(일) [3일간]
 - 개막식: 2026. 10. 9.(금)
 - 진천 뮤직페스타, 폐막식: 2026. 10. 11.(일)
- 행사장소: 진천군 진천읍 백곡천 둔치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예산: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및 대행수수료 포함
- 과업내용
 - 개·폐막식 기획 및 연출(출연자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
 - 행사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개막 축하공연은 특별 편성하여 방송
 - 진천 뮤직페스타 진행(기획, 진행, 섭외, 심사, 의전 등 일체)
 - 기타 발주기관이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II 과업내용

본 과업의 내용은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이하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축하공연 추진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사업의 기획, 연출, 진행 등 축제 전반의 체계적인 실천방안 반영
- (재)생거진천문화재단에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
-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하나되어 참여하고 즐기는 축하공연 계획 수립

2. 추진방침

- 진천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 군민 화합 도모와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장 마련
- 진천군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기획을 통한 축제 업그레이드
- 공연자 섭외 및 관객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 대행

3. 사업대행 범위

- 사업기획(개·폐막식, 진천 뮤직페스타), 연출, 행사준비 전반
- 출연자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
- 홍보 마케팅(홍보, 배포, 철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안전대책, 청소, 우천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4.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

- 대행사는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주제인 「새로운 진천의 시작, 함께 여는 미래 진천행 출발행!」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며, 주제가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행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5. 개 · 폐막식, 진천 뮤직페스타 기획 및 운영

- 대행사가 제시한 사업기획은 행사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출연진 등의 섭외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이동 등은 대행사가 책임진다.
- 행사에 필요한 방송장비와 방송소품은 대행사가 전담한다.
- 기타 행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행사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6. 축하공연 주관 방송사 선정

- 대행사는 축하공연을 특별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방송사와 계약하여야 한다.

7. 방송시설

- 행사에 소요되는 방송장비 등은 대행사가 전담하여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사장 내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 방송장비는 최고의 품질을 갖춘 장비로 모든 관객들이 최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8. 인력

- 대행사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인력확보, 배치 등 일정을 준수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무지원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행사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에 임해야 한다.
- 대행사는 각 행사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요원 및 도우미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선발하고,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수송

- 무대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물 등 운영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감염병 감염 전파 요인 사전 차단 및 현장 대응 방안 수립·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공연개시 7일전까지)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행사운영과 관련 출연진 수송에 필요한 차량의 확보와 운영은 대행사가 책임진다.
- 수송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10. 홍보

- 대행사는 본 행사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연을 통해 진천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각종 미디어 및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사전·사후 행사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및 온라인 홍보 계획 제시
- 대행사가 제시한 홍보방안은 대행사가 전담하여 운영하되 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행사와 관련하여 인허가 받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사가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행사는 행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용품은 가급적 진천군 관내업체에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행사 프로그램의 연출 및 기획(섭외가수, 출연진 등)

《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 홍보방안

- 축제 개최 30일 전부터 단계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제시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제시
- 축제 개최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제시
- 행사의 취지와 주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홍보방안 제시

○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 행사장 안전관리 운영계획수립(출연진 관리 및 운영 등)
- 감염병 발생, 악천후,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 각종 환경변화에 대비한 재해대책 수립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관람객 대피계획

○ 1일차(개막식)

- 축제 정체성과 주제를 반영한 개막식 연출
- 전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하공연 제시 및 출연가수 구성 (A급, B급, C급 구분하여 제시)
- 방송 송출 계획
- 사회자는 식전공연, 공식행사 및 축하공연을 포함한 전체 개막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전문 사회자 2인(남/녀 각 1인) 구성

○ 2일차: 해당없음

○ 3일차(진천 뮤직페스타·폐막식)

- 진천 뮤직페스타 연출 및 운영 전반 수행
: 행사진행, 의전 운영, 심사 운영, 시상식 운영, 기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
- 행사 진행이 가능한 전문 사회자 1인 구성
- 인지도 있는 출연 가수 섭외 (A급, B급, C급 구분하여 제시)

I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방송홍보 및 축하공연 행사대행’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지시·감독 하에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진행 상황 및 현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한 범위 내에서 과업 실행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책임자의 출장, 자료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발생한 성과품은 별도의 저작권이 없는 이상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제반비용은 포함시킬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해 과업수행기관의 배상책임이 있음
- 본 과업에 대해 발주기관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음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대행시킬 수 없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기간 및 과업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상이변, 정부의 명령 등으로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상 용역 기간이 추가 또는 단축될 경우
- 과업수행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효력이 발생함

2. 사업 수행인력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통합 관리·책임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과업책임자를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일 기준 과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인선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 과업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에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용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으로 가지고 본 용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과업 진행과정에서의 인력 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하되, 과업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과업수행기관에게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거나 증원하여야 함

3. 손해배상

- 행사 시 설치한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은 과업수행자가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과업수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함

4. 보안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수립과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 있음
- 과업 진행과 관련해 모든 성과품·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기관이 소유,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발주기관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서 도출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져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5. 과업변경 조건

-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 변경이 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질병 및 비상상황)에 의해 발행한 불가피한 사태 등으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일정 변경(연기 등)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 간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 본 세부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기획 및 제작을 위해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6. 과업 결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판권 등의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과업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성과물을 활용해서는 안됨
-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여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함
-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기관이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 용역과 관계한 생산한 자료와 모든 기록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

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성실히 과업수행을 이행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이 계약과기에 따른 발주기관에게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기관이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계약내용이나 과업 지시 내용,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의 추진목적 및 발주기관의 추진방향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과업 수행일정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작 진행 중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함)
- 과업수행기관이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기관의 고의,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특이사항

- 예산 수립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제시한다.
 - 예산구성(안) : 과업의 효과적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역사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함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재)생거진천문화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개요와 하드웨어 시스템 사양목록을 미리 숙지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견적서 및 추가사항에 명시된 장비 전체를 투입해야 하며 리허설 및 공연 전체 제반사항에 필요한 인력운영을 책임 운영한다.
- 축제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비는 행사전 제출 자료에 기술한 품명의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재)생거진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그에 준하는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의 요구에 용역업체는 성실히 임하며, 시스템 설치 및 이후 수정, 변경, 추가설치 등의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준비 및 진행을 과업수행기관의 책임하에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히 (재)생거진천문화재단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 승인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명단을 (재)생거진천문화재단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은 용역업체의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기관은 (재)생거진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해 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의 판단에 따른다.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에 대해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생거진천문화재단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일반현황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또한, 본 과업내용에 의해 제출된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 낙찰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본 과업내용(과업지시서) 및 범위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 변경이 가능하고 행사계획의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상황(각종 감염병 등) 진행상황에 따라 방문객 안전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성립 후에도 행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중 취소 시 계약일로부터 취소 통보일까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 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사업완료시 완료계, 결과보고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영상과 사진의

원본은 USB(1개)를 통해 제출해야한다.

10. 과업수행보고사항

구분	내용
착수보고	• 과업개요(착수계), 과업수행일정, 현장대리인계, 책임·참여 책임자 현황, 보안각서
과업 수시보고	• 사업수행 전반적 데이터 관리 및 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서면 또는 대면)
최종 완료보고	• 과업 전반 결과보고서

11. 성과품 제출 및 정산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하에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재작성하여 제출함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정산은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해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않음

○ 성과품 제출 목록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완료계	A4	1부	인쇄물
사진대지	A4	1부	인쇄물
결과보고서	A4	1부	인쇄물
과업에 포함된 모든 산출물(사진, 동영상, 디자인 파일, 결과보고서)	USB 또는 메일	1개	파일
대금청구서	A4	1부	인쇄물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 사유가 발생 시 과업수행 기관은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 완료 후 규격에 맞춰 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최종 성과품 납품으로 간주함